

파견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안전보건조치 3가지



1. 파견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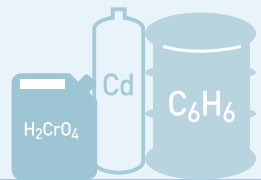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근로자 1인 이상을 파견한 사업주는 파견사업장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에 의하여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2. 근로자 파견 금지업무 확인

- 다음 작업에는 근로자를 파견하면 안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3항)

산업안전보건법상 파견금지 해당업무

1.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① 도금작업
 - ②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③ 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 ①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
 - ② 염화비닐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
 - ③ 크롬산·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④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외 파견금지 해당업무

1.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하역사업(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3.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4. 하역업무(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5.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직업안정법 제33조)에서의 하역업무(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6. 선원의 업무(선원법 제2조제1호)
7.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8. 의료인의 업무(의료법 제2조)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의료법 제80조)
9. 의료기사의 업무(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1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3. 사용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 확인

-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견사업주도 이를 확인하여 파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지켜 주세요.
 - ※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화학물질 안전보건조치 10가지(뒷면 참조)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화학물질 안전보건조치 10가지



화학물질취급근로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보하여 유해성·위험성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MSDS**를 게시·비치하고, 용기 및 덮어 쓰는 용기 등에 반드시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취급근로자에게 반드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작업 시에는 화학물질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환기 설비(**국소배기장치**, 환풍기 등)를 가동하여 화학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하여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화학물질 안전보건조치 10가지



근로자에게 적합한 **개인보호구(방독마스크, 보호복 등)**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세면·목욕 등을 할 수 있도록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작업 후에는 **작업복과 노출된 신체 부위를 깨끗하게 세척**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화학물질 취급으로 **신체에 이상(구토, 호흡곤란, 피부발진 등)**이 발생되면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의사의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